

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(2026~2030년)

2026. 1.

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농업고용인력 현황 및 전망	2
III. 정책과제	4
IV. 비전, 목표, 핵심과제	5
V. 세부 추진계획	6
1. 현장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인력공급	6
2.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	15
3. 농업고용인력 지원기관 기능 강화	26
VI. 추진일정	28

I. 추진배경

◇ 농업·농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농업 노동력 확보가 큰 과제

- **농가 고령화***, **농촌 공동화****로 농업 노동력 확보의 불확실성 심화
 - * 65세 이상 인구 비율('24) : 전체인구의 20.0%, 농가인구의 56.6%(2.8배 ↑)
 - ** 인구변화: '15년, 전국 51.5백만명/농촌 읍면 9.5백만명 → '24년, 51.2(△0.6%)/9.3(△1.4%)
- 농업 노동시장은 특정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적기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큰 상황
 - * 농번기(5·10월) 임시·일용인력 수요는 농한기인 1월 대비 4.4배 ↑

◇ 공공부문 인력 공급은 지속 확대 중이나 노동자 안전·인권은 취약

- **국내인력 농촌 중개 확대, 고용허가제('04~, E-9, 노동부)·계절근로제('17~, E-8, 법무부) 등을 통해 외국인력 지속 확대 중**
 - * 국내인력 중개실적: ('20) 1,336천명(연인원) → ('21) 1,610 → ('23) 2,353 → ('25.11월 말) 2,616
 - ** 외국인력 체류(E8·E9) : ('20) 20,689명 → ('21) 18,319 → ('23) 58,232 → ('25.10월 말) 104,882
- 공공부문에서 '24년 고용인력 수요(연인원 33.9백만명)의 51.2% 지원
- **농업 노동자의 산업재해·사망사고 발생률은 제조업 보다 높으며, 사고 발생이 줄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**
 - * 5년 평균('19~'23) 산업재해율/사망만인율: 농업 0.81%/1.30‰ > 제조업 0.77%/1.23
 - ** 농업 재해율: ('19) 0.81% → ('20) 0.81 → ('21) 0.85 → ('22) 0.81 → ('23) 0.76
- **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종종 발생, 사회적 문제로 대두**
 - * (사례) '25.2월 양돈농가에서 농장주·작업반장의 상습 폭언·폭행으로 네팔 근로자 사망

◇ 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('24.2 시행)」에 따라 고용인력 수급·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인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

-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(제1차: 2026~2030)을 수립해야 함
 - 그간 고용인력 대책이 농번기 인력수급에 중점을 두었다면, 금번 기본계획은 **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공급 확대방안과 그동안 깊이 다루지 않았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포함**
 - *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주요내용: 고용인력 양성, 장단기 수급관리,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, 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등

Ⅱ. 농업고용인력 현황 및 전망

1. 수급 현황

- '23년 기준, 농업고용인력은 30.9백만명(연인원)으로 전체 농업인력(301.0백만명)의 10.3% 차지* ('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)
 - * '23년 농업인력 301백만명(고용인력 30.9백만명, 자가인력 270.1백만명)
- (고용 형태별) 상용인력^{1년이상} 10.3백만명, 임시^{1월~1년미만} 5.8, 일용^{1월미만} 14.9 규모로 일용인력이 전체 고용인력의 48.0% 차지
- (품목별) 시설채소 고용인력이 가장 많고, 축산, 과수, 노지채소 順
 - * ①시설채소 7.8백만명(상용 3.3, 임시 2.3, 일용 2.2), ②축산 5.7백만명(상용 3.9, 임시 1.6, 일용 0.3), ③과수 5.0백만명(상용 0.5, 임시 0.5, 일용 4.1), ④노지채소 4.0백만명(상용 0.3, 임시 0.4, 일용 3.3)
- (내·외국인 구성) 외국인력이 64%, 국내인력이 36% 차지
- '25년 2분기 일용임금은 전년대비 1.1% 상승, 최저임금 인상률(1.7%) 감안시 인력부족에 따른 임금상승 압박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
 - * 2분기 기준, 전년대비 임금증가폭(통계청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중 노무비 활용) : ('15~'20 평균) 3.9% → ('21) 7.7 → ('22) 12.2 → ('23) 7.5 → ('24) 2.8 → ('25) 1.1
- 다만, '25년 법무부의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, 농업분야 인력 부족률은 8.3~37.9*으로 제조업 2.5% 대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
< '25년 농업인력 부족 현황('25 법무부 외국인고용실태조사) >

구분	일용직		임시직	
	부족률	연인원(만명)	부족률	연인원(만명)
불법체류자 포함	8.8%	176	6.9%	53
불법체류자 미포함	36.5%	1,050	41.1%	497

2. 수급 전망

- 재배면적 감소*, 기계화**·스마트농업 확산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인력 수요 감소 전망('25 : 33.1백만명 → '34: 25.4)
 - * 재배면적 전망(KREI): ('25) 1,579천ha → ('30) 1,549 → ('34) 1,522
 - ** 기계화율(농진청,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) : 논농업 ('15) 97.9% → ('23) 99.7(연평균 0.2%p ↑), 밭농업 ('15) 58.3% → ('23) 67.0(연평균 1.1%p ↑)
- 다만, 고령화 심화로 외국인력 의존도는 높아질 전망('25년 62.5% → '34년 68.1%)

3. 산업안전

- 고용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및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
 - 「중대대해처벌법*」 적용 대상이 '50인 이상 → 5인 이상' 사업장으로 확대('24.1)
 - * 사업주가 안전확보의무(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,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/시설/장비 구비, 중대재해 발생 조치 매뉴얼 마련 등) 소홀히하여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주와 법인 처벌
 - 폭염시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강화('25.7)
 - * 폭염작업 5대 수칙: 물, 바람·그늘, 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보냉장구, 응급조치
- 그러나, 농업은 고령자가 많은 소농 구조*로 농업인이 자력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, 안전의식 수준도 대체로 낮음
 - * 경지 면적별 농가 비중('24): [1ha 미만] 74.7%, [5ha 이상] 3.4%
 - 고용주인 농업인과 노동자 간 역할분리 없이 같은 작업환경에서 함께 근로하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저하
 - 특히, 고령농은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고 교육효과의 발현도 느린 편
 - 이에, 고용주의 책임·의무만 강조하기보다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가 농업인에게도 안전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

4. 근로자 인권

- 국제적으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시 무역 제재가 강화*되는 가운데 농업인의 인권 의식을 제고할 필요
 - * (미국) 총 62건 수입금지 조치(1930~'25.9), 한국산은 A社 천일염 제품에 통관금지한 바 있음('25.4)
(EU) '24년 강제노동 결부제품 금지규정 발효, '27년부터 수출입 금지 계획
- 농업 현장에서는 인권보다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, 노동자 인권 보장에 관한 감수성 부족
 -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급원으로만 인식하는 사례 종종 발생, 도시지역보다 인권교육 및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한계도 존재

Ⅲ. 정책과제

-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고용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
 - 공공부문 인력공급률을 높여 필요인력을 적기·적소에 공급할 필요
 - 다만,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면 팬데믹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어 적정규모의 내국인 비중 유지 필요
 - 자체 인력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등 공공성 있는 인력운영시스템 확대 필요
 - 노동생산성 제고 위해 단기 비숙련인력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농가에 매칭하는 체계 구축 필요
- 외국인 노동자 중 일부가 산업재해와 인권문제에 노출됨으로써 농업분야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
 - 고용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농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료로 대하는 농업계 인식 전환 촉진
 - 고용주인 농업인과 노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확산
 -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시설·장비의 개발·보급 확대
 - 산업재해 예방, 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 강화
- 농업 고용인력 확보 및 안전·인권문제 대응은 다기관 협력과제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
 - 외국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노동부·법무부와 협력, 국내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·농협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
 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·농진청과 협력하고,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는 법무부·노동부와 공동 대응하되 인권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 강화

IV. 비전, 목표, 핵심 과제

비전

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
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

목표

고용인력 수급안정

+

근로환경 개선

① 공공부문에서
고용인력 공급 확대

['24] 51.2% → ['30] 60.0%

② 쉼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

['25] 93.3% → ['26] 100%

③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
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('26)

정책 방향

핵심 과제

① 현장 수요에 대응한
안정적 인력 공급

- ①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 40% 이상으로 확대
- ②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외국인력 도입 개선
- ③ 고용인력 양성 체계 구축

②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
근로환경 조성

- ①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
- ②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제도 보완
- ③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

③ 고용인력 지원기관
기능 강화

- ① [지방정부] 농촌인력중개센터 기능 차별화
- ② [농정원] 고용인력 육성에 특화
- ③ [농협] 인권보호 기능에 특화

V. 세부 추진계획

1 현장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인력 공급

1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 40% 이상으로 확대

현황 및 여건

- 농촌인력중개센터('18년~), 도농인력중개플랫폼('23~), 일손돕기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농가에 국내인력 중개* 중

* '24년 중개실적: (중개센터) 189개소, 130.3만명(연인원) / (플랫폼) 6.6만명 / (일손돕기) 114.3만명

- 180개 시·군 중개센터 중 104개소(62개 시·군이 인구감소지역*에 위치해 있어 지역 내 구인이 어렵고, 고령화도 심각하여 신규인력 확보 절실

* 행안부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89개 시·군·구 지정('21)

* '25.6월 기준, 중개센터가 운용 중인 실인원 40.5천명 중 65세 이상이 52.9%

-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임금*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고, 교통 등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많아 구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

* 시간당 근로자 임금총액(노동부, '24년 고용형태별근로자실태조사) : 농림어업 21,758원, 건설업 26,378원, 광업 26,975원, 제조업 27,372원

현장의 목소리

- “농촌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인근 도시에서 구해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. 교통비 같은 걸 지원해주면 좀 낫긴 하죠”

- 전체 농업고용인력에서 국내인력은 36%를 차지('23), 팬데믹 등에 따른 외국인력 공급 불안 상황에 처했을 때 인력공급 차질 우려

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

◆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現 36 → '30년 40%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,

○ 신규인력 유입 촉진,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정책 집중 추진

□ (신규인력 유입) 예비 청년농, 도시민, 대학생 등을 신규 고용인력으로 유입, 원거리 노동자에게는 교통비·숙박비 지원 확대*

* (現) 교통비 최대 1만원/일, 숙박비 2만원/일 → (개선) 교통비 최대 2만원, 숙박비 3만원

○ (예비 청년농) 청년들이 희망하는 품목* 중심으로 이들이 일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 증대

* 청년농 생산품목('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실태조사): 채소(시설·노지) 38.8%, 과수 26.2%, 식량작물 21.2%, 축산 16.8%, 특용작물 6.7%, 화훼 5.5% 등

- 그린대로(귀농·귀촌)·탄탄대로(청년농)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, 도농인력중개플랫폼·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결하여 구직 신청 편의 제공

- 농작업 참여 실적은 영농정착지원금 등 청년농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

○ (도시민) 고용복지플러스센터(노동부)를 통한 농업 구인 정보 제공, 도시농협(238개소)을 통한 농촌 일손돕기 홍보 확대 등 추진

○ (여성·대학생)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구직자에 시간제 일자리 정보 제공

- 농업계 대학 설명회·SNS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,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농작업 참여자에게 임금과 별도로 지역 농축산물 제공방안 검토

- 다문화 가족센터(19개소)와 협업하여 영농경험이 있고 농외소득 활동이 필요한 다문화 여성에게 농업 일자리 정보제공

❖ 지방정부 사례(충북형 도시농부)

- ▶ (대상) 20~75세까지 청년, 은퇴자, 주부 등 비농업인
- ▶ (지원내용) 1일 4시간 근로에 대해 교통비, 인건비 일부
- ▶ (지원물량) 충북 전역 11개 시·군, 30만명(연인원)
- ▶ ('25년 예산) 지방비 133억원



※ 출처: 충청북도

- **(인력운용 효율화)** 시·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농작업 인력풀을 시·도 단위에서 통합·운영하여 인력운용의 효율 제고
 - 시·군별 주산 품목에 따라 인력수요 시기가 다른 점을 감안, 시·도 중개센터는 농작업 비수기에 있는 시·군 인력풀을 타 시·군에 제공
 - * '25.6월 기준,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풀 중 시·군간 이동 가능한 규모는 10.3%(4.2천명)
 - 지역별 작물 정보, 구인·구직 정보 등을 AI를 통해 분석, 시·군별 고용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시·도 중개센터에 제공, 인력의 효율적 이동을 지원('27,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개편)
- **(인력+농기계 연계)**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농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을 연계하여 농기계 작업 지원 강화
 - 농가가 농기계 임대와 인력 알선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, 중개센터가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중개하여 농기계와 인력 통합 지원
 - * (現) 임대 농기계 사용은 '신청 농업인'만 가능 → (개선)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중개한 근로자(관련 교육 이수자)도 임대 농기계 사용 가능
- **(도농 교류)** 농촌일자리 정보를 도시에 제공하여 인력을 유치하는 도·농 지방정부간 '도농인력이음*' 추진, 우수 지방정부는 포상·홍보하여 전국 확산 도모
 - 도시민이 농촌에서 농작업과 소비·관광을 함께할 수 있는 모델 발굴·장려
 - * 도시·농촌간 MOU, 농촌일자리 정보 제공 → 농작업 참가자에게 숙소·농촌관광·지역 농축산물·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등 지원(지방정부)

장단기 로드맵

과제별	'26	'27~'28	'29~30
▶ 신규인력 유입	▶ 인력풀 확대 (現 46천명 +1천명)	▶ 인력풀 확대(+3천명, 누적)	▶ 인력풀 확대(+5천명, 누적)
▶ 인력운용 효율화	▶ 교통·숙박비 지원 확대	▶ 인력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	▶ 인력수요 예측 정보 제공
▶ 인력+농기계 연계	▶ 시·도단위 인력풀 통합 (시·군간 인력풀 정보 공유)	▶ 인력과 농기계 연계 지원 (농기계임대사업 지침 개정)	▶ 인력+농기계 연계 지원계속
▶ 도농 교류	▶ 도농인력이음 우수모델 발굴·홍보	▶ 우수사례 포상	▶ 전국 확산

2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외국인력 도입 개선

현황 및 여건

-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계절근로제(비자: E-8), 고용허가제(E-9), 숙련기능인력제도(E-7-4)를 통해 도입
 - (계절근로) 회당 '최대 8개월' 체류 가능, 주로 농번기 등 특정시기 인력 수요가 높은 채소·과수 농가에 고용('25.10월 기준 69,812명 도입)
 - * 지방정부간 MOU 체결, 양국 지방정부가 직접 외국인노동자 선발·도입·알선 업무 수행, 회당 최대 체류기간 8개월(8개월 → 출국·재입국 → 8개월, 횟수 제한 없음)
 - (공공형 계절근로)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('25: 90개소, 3천명)
 - (고용허가) 최대 9년 8개월 체류 가능(4년 10개월씩, 총 2회), 주로 연중 근무가 가능한 시설원예·축산 농가에서 고용('25.10월 기준 35,070명 근무)
 - * 국가간 MOU 체결, 공공기관(산업인력공단 및 송출국 공공기관)이 직접 외국인노동자 선발·도입·알선 업무 수행, 최대 체류기간 9년 8개월(3년+1년 10개월 → 출국·재입국 → 3년+1년 10개월)
 - (숙련기능인력) 고용허가제로 4년 이상 근무 + 한국어·소득요건 등 충족시 전환(2년마다 횟수 제한없이 갱신 가능, '25.10월 기준 723명 전환)
- 공공형 계절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간(3~8개월)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 지원, 인건비 안정화 효과*로 농가수요 증가 추세
 - * 임금·노무관리 등 인력 계속 고용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, 지역내 인건비 안정화 효과
↳ 농협이 근로계약한 수준으로 인건비가 고정되어 농번기 인건비 절감(2만원/人.日 ↓)

현장의 목소리

- (농가) "공공형 계절근로가 없으면 농사 못해요, 예전에는 농사가 소규모였는데 공공형 계절근로가 시행되면서 인력 확보가 되니까 영농규모가 커졌어요"
- (운영농협) "지역의 인력을 100% 충족 못하지만,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, 지역에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"

-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위해 농협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및 시행주체 확대(+농업법인) 등 검토 필요

현장의 목소리

- "최대 8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·국민연금 부과 대상이고,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부담이 큼니다"

□ **농가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과다***하여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근무처 변경 등의 문제 발생

* 인력수요 제출(농가→지방정부→출입국관서) → 인력배정(법무부)

↳ 예) 시설원에 2,600㎡미만의 경우 최대 허용인원 5명

- 농가의 재배작물별 특성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는 농가의 급여부담 완화 위해 인근 농가로 임의 근로하도록 하는 상황

* 출입국관서 허가없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,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해당 농가 및 노동자에게 벌칙 부과(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범칙금)

□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인력 도입에 차질이 발생

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전체의 57%가 농번기(3~5월)에 입국이 집중*되어 신속·적기 도입 위한 행정 지원 필요

* 계절근로 도입인원: ('22) 10.5천명 → ('24) 51.5(5배↑), 3~5월에 57%(29천명) 입국

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

◆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로 인력부족 문제 완화, 농업분야 불법체류자 활용을 줄이기 위한 숙련노동력 공급체계 구축

◆ 공공형 계절근로도 현재의 2배 이상 확대('25년: 90개소, 3천명 → '30년: 200개소, 6천명)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 강화

◆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

□ **(계절근로 도입 확대) '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18,181명 추가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 완화**(불체자 포함 부족분 14,313명 대비 127%)

* 계절노동자 도입현황: ('25.11월) 73,923명 → ('26 상반기 배정안) 92,104명(18,181명↑)

- (공공형) '30년까지 200개소 이상 확대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강화('25 90개소/2,786명 → '26 130개소/4,729명 → '30 200개소/6천명 이상)

- 농협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* 납부 제외 등 제도개선 추진(복지부 협조)

* 現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(E9)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용 제외

- (농가형) 농가가 신청한 수만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('25년 11월 기준, 도입인원 71,137명 → '26년 87,375명, 신청규모의 98% 수준)

* '26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87,375명, 공공형 계절근로 4,729명

- **(숙련노동력 확보)** 불체자 활용을 줄이기 위한 숙련노동력 공급체계 구축
 - **(농작업 위탁형 확대)** '26년 2개소(경기 포천, 경남 의령) 시범사업 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여 빠르게 전국 확대(법무부 협조)
 - 운영기관을 농업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지방정부 출자·출연기관 등으로 다양화(유료 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 제외)
 - 사업운영의 공공성 제고 위해 지방정부가 사업주,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표준 농작업 대행 수수료 기준 마련
 - **(제도개선)**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, 우수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허가 및 숙련기능인력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*
 - * 우수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E-9 선발 시 가점 등 우대(노동부 협조)
- **(계절근로 도입지원)**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신속 도입 위한 지원 강화, 지방정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(법무부 협조)
 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많은 지역 출입국관리소 중심으로 '사증발급전담팀' 운영, 전자비자 발급 등 재입국지에 대한 절차 간소화 검토
 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'現 수기 관리 →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' 체계*로 개편
 - *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사증발급신청서 신청, 농가 배치, 근무처 변경, 근무 이력 등 관리
- **(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)** 체류자격별 배정기준* 개선(법무부·노동부 협조)
 - * 現 외국인력 배정기준 예시(시설원예):
 - ① 계절근로[5개 구간]: (최저) 2,600㎡미만: 5명 이하, (최대) 6,500㎡이상: 9명 이하
 - ② 고용허가[6개 구간]: (최저) 2,000~4,000㎡: 8명 이하, (최대) 21,500㎡ 이상: 40명 이하, 2,000㎡미만의 경우 고용허가 노동자는 배정 불가
 -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를 감안, 재배면적별 허용인원 기준을 개편하여 외국인력 수요농가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 인원 배치
 - 배정기준인 작물재배·가축사육 면적의 적정성 검토(단위면적당 노동 투입시간, 자가인력 투입율 등 분석) 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 마련

장단기 로드맵

과제 별	'26	'27~'28	'29~30
▶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	▶ 130개소(4,729명)	▶ 170개소(5,100명)	▶ 200개소(6,000명) 이상
▶ 고용방식 다양화	▶ 농작업 위탁형 시범운영	▶ 농작업 위탁형 확대	▶ 농작업 위탁형 확대(계속)
▶ 계절근로 도입 지원	▶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·운영	▶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계속	▶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
▶ 적정규모 인력 도입	▶ 외국인력 배정기준 개선 연구	▶ 의견수렴 및 배정기준 개선	▶ 개정된 배정기준 적용계속

3 고용인력 양성 체계 구축

현황 및 여건

-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 대상 기초 농작업 교육 추진 중이나, 노동자의 교육 참여도는 낮은 편*

* '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서 내국인 노동자 6,395명 중 7.5%(478명)만 교육참여 경험 있다고 응답
교육과 일자리 및 임금과의 연계 미흡, 다양한 교육과정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

- 교육은 주로 농작업 시작 前 농가에서 이루어지며, 정부는 농작업 경험이 없는 내국인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(6만원/3일)
- 농작업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노동자 정보 관리,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부재로 인력 활용의 효율 저하
 - 농가는 노동자를 농작업에 투입하기 전까지 작업 능력을 알기 어려움

현장의 목소리

- “제가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으면 작업능력을 미리 알 수 없어 좀 불안하긴 하죠”
- 농사경험이 없는 초보자는 뭔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왔으면 좋겠습니다”

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조건으로 농업 경험 1년 이상을 요구하나, 사실확인이 어렵고, 실제 도입 인력 중 농업 경험 없는 자가 상당수

- 농식품부는 외국인력 교육을 위한 다국어 영농기술 영상* 보급 중
 - * 발작물 17개(사과, 고추 등)의 파종·정식,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을 8개 외국어로 제작(25.3월)
-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입국 추천제도*를 운영, 전체 도입인력의 37% 수준 운영 중(25.6월 기준)
 - * 농가가 근무 중인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우수노동자로 출입국관서에 추천하면 해당 노동자는 재입국 시 서류 간소화, 비자수수료 면제(60 USD) 등 혜택이 부여되고 추천 농가에 재배치

현장의 목소리

- “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이 젊고 힘도 세니까 좋은거 같아요. 다만 처음에는 한국농업을 잘 모르니 농기구 사용법이나 작업 요령을 가르치는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”

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

◆ 품목별·농작업 난이도별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용인력의 숙련도 제고, 구직자 경력관리를 통한 맞춤 중개 추진

- **(국내인력)** 품목별·농작업 난이도별 맞춤 교육 및 이력관리 추진
 - **(신규 인력)**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(농정원), 시·군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신규 구직자 대상 교육 추진
 - 교육 프로그램에는 품목별 정식~수확까지 기본적인 농작업 요령을 포함, 교육장소로는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(WPL) 등을 활용, 강사비 등 교육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(80백만원/개소)를 활용하여 지원
 - **(경력자)** 농기계 임대사업소*와 협업하여 농기계 사용법 등 농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 지원**
 - * 전국 477개소에서 트랙터, 경운기, 이앙기, 관리기, 파종기, 정식기 등 총 96.9천대 보유
 - **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비(80백만원/개소)를 활용하여 강사비 등 교육비 지원
 - **(이력관리)** 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(NCS*)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작업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, 경력개발 및 일자리 매칭에 활용
 - *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: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(24개 산업분야, 1,100개 NCS 세분류),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위해 활용
 - 채소·과수·화훼·시설·유기 재배 등 품목별 능력단위로 세분화
 -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농업 노동자의 숙련도와 농작업 경험, 구인농가 정보*를 관리하여 맞춤형 인력 중개 지원
 - * 농가별 재배품목·면적, 농기계 보유 여부, 선호 작업자 특성 등

❖ NCS를 활용한 인력관리 사례(건설업)

- **(목적)** 노동자 경력관리 통한 숙련인력 확보 위해 **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** 도입(21)
- **(주요내용)** 현장 경력, 자격증, 교육훈련 이력 등에 따라 4단계 구분(초·중·고·특급)
 - * 기능등급제 등록 근로자: 92.5천명(전체 건설근로자의 64.8%)
- **(지원내용)** 교육비 무료, 참가자에게 교육 참가비 지원(27천원/일, 최대 4일)
- **(현장적용)** 국토부 및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고급 이상 인력 배치 시범 추진(24.12)

1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

현황 및 여건

- 최근 5년 평균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0.81%*, 산업재해로 인한 농업 노동자 사망만인율은 1.30‰**으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
 - * '19~'23 연평균 산재율(재해자수/노동자수×100): 전체 0.62, 농업 0.81, 제조업 0.77, 건설업 1.25
 - ** '19~'23 연평균 사망만인율(사망자수/노동자수×10,000): 전체 1.06, 농업 1.30, 제조업 1.23, 건설업 2.24
 - ↳ 산업재해로 인한 농업노동자 사망자 수: ('19) 9명 → ('20) 10 → ('21) 11 → ('22) 12 → ('23) 12
- 사고 유형으로는 낙상 38.2%, 농기계 사고(끼임 등) 26.8%, 근골격계 질환 및 열사병 23.0% 順('24~'25.6월, 농업인안전보험 지급현황)
 - 특히, 농업분야는 논·밭 실외 작업이 많아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('25년 농업분야 온열질환자는 595명으로 전년대비 3.1% 증가)
 - * 농업분야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('25) : 논·밭 91.1%(542명), 비닐하우스 8.9%(53명)
- 농업분야 산재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은 증가 추세로,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50%를 지원 중
 - *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현황(사업장/근로자) : ('21) 15.8천개소/55.5천명 → ('24) 24.4/79.3
 - ↳ 임의가입(5인 미만 고용 농가) : ('21) 3.8천개소/5.0천명 → ('24) 11.5(3배↑)/20.6(4배↑)
 - * 농업인안전보험(근로자용) 가입자 수 : ('21) 11.5천명 → ('24) 24.5(2배↑)
- 계절근로 전용 농업인 안전보험도 출시('25.1), 다만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6.7%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('25.7, 행정조사)
 - *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나, 외국인등록번호는 입국 후 90일이 지나서야 발급되어 입국 즉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
- 최근 고용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어 농업분야 대비 필요
 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으로 확대('24.1월)되어 일용직 5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적용 대상*이 될 수 있는 상황
 - * 사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5명 이상 고용한 일수가 1/2 이상인 경우

현장의 목소리

- "일용직이 많은 우리 농장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,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인부들에게 농작업 중에 안다치게 조심하라고만 하고 있어요"

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

- ◆ 안전점검 강화, 농가 교육 등을 통해 농가·노동자의 안전 의식 제고
- ◆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

□ **(안전의식 제고)** 농가 고용주 및 노동자가 함께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진단·개선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○ **(안전 사전 점검)** 농업 안전체크리스트*를 개발·보급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 배정 前 농작업 환경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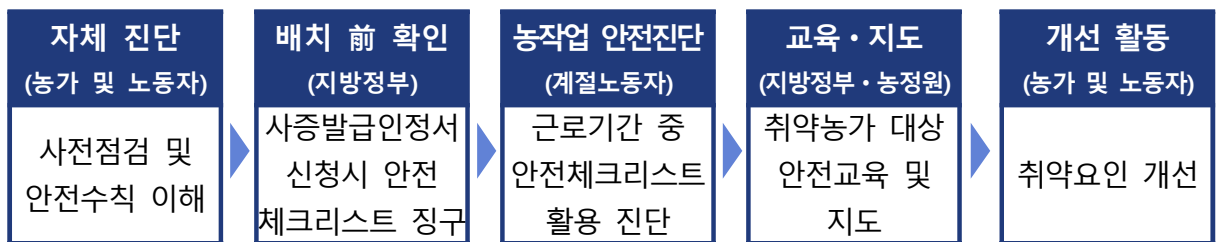
* 점검 항목: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, 개인보호구 확보, 안전·상해 보험 가입,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인지 여부 등 확인

- 우선,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안전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(26) → 모바일 기반 안전체크 및 진단·제출 체계 구축 후 전체 농가로 확대

- 진단 결과에 따라 농가별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* 추진

* (예시) (인식부족) 농작업안전관리단(농업교육안전지도사: '25 104명)을 구성하여 농가 안전교육 및 지도 강화, (노후시설) 시설현대화 사업자금 지원 등

< 예: 안전체크리스트 기반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 >



○ **(안전교육)** 농업분야 위험도가 높은 3대 안전사고(추락·농기계사고·온열질환) 중심 체감도 높은 교육콘텐츠 개발, 안전교육 강화

- 키 메시지 콘텐츠(외국어 안내자료 포함)*·VR 기반 농업인 맞춤형 교육 콘텐츠** 제작·배포 통해 교육 실효성 제고

* (예시) 과수 수확 중 사다리에서 추락 ⇨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!

** (예시) 가상 환경에서 온열질환 경험하고 대처 방법을 학습하는 시뮬레이션 제공

- (안전 근로계약) 농번기, 폭염·장마기 등 농작업 시기별 근로형태를 고려한 「안전 근로계약서」 개발·보급, 관련 제도개선 검토

* 농번기에는 근로시간 연장, 폭염·호우 시기에는 기상여건에 따라 축소·조정 등 탄력 운영

현장의 목소리

“혹서기에는 노동자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작업 시작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겨야 하는데 야간근로(오후 10시~오전 6시)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”

□ (농작업장 안전 환경 조성) 스마트 시설·장비 지원 등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

- (스마트 안전장비) 온열질환 예방, 근골격계 부상 경감 등 농작업 사고·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시범보급(농진청)

* (온열질환) 에어냉각 조끼 보급(25~26), 손목착용형 온열질환 위험 알림장치 개발 및 실용화(25~) / (근골격계 부상) 중량물 운반 및 근력 보조 슈트 등



- (안전관리 지원) 농진청과 안전보건공단간 협업을 통해 농작업장에 대한 안전시설·장비 지원, 농가 대상 사업참여 홍보* 강화

* 안전보건공단의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, 산재예방시설 용자지원 사업 등

❖ 농가 안전관리 지원 협업사례

- (참여기관) 농진청, 광주고용노동청,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공동참여
- (대상지역) 호남권 25개 시·군
- (내용) 농가교육을 통한 ① 안전보건 컨설팅, ② 온열질환 예방 장비 및 안전시설 지원(안전보건공단, 산재가입 사업장 대상, 2천만원~3천만원 한도, 보조 70~80%)

□ (중대재해 예방)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지원 강화

- (교육·홍보) 농업인 안전재해예방교육*에 중대재해 예방분야 확대, 새해영농교육 자료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포함,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Q&A 등 관련 콘텐츠 제작·배포

* 現 130개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면교육 실시 중(안전장비 활용, 응급처치 요령 등)

○ 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) 시·군에 농업분야 안전관리 전문가를 **확충***하여 사업장 위험성 진단·개선 및 현장지원 확대** (농진청)

* 現 농업기술센터에 고용된 농작업안전관리자(농작업안전보건 기사 등) : 20개 시·군, 40명

** 사업 대상: (現)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자 → (개선) 5인 이상 사업장(법인 포함) 전체 확대

- 농협·생산자단체 등에 **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***(노동부) 참여 홍보

* 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: 업종별 사업주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지원(월 250만원 한도, 운영비 80% 최대 12개월 지원)

②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: 위험성평가기반 사업장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

○ (안전문화 확산) 농업인 중심의 안전재해 예방문화 정착 지원

- 안전교육 이수 등을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할인,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과 연계되도록 검토(기본요건화, 가점 부여 등)

- 재해예방 노력 우수사업장, 업무담당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

□ (보험가입 확대)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('26.2), 산재보험 수준 이상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*(특약) 개발

* (現) 고도장해급여·유족급여 1.2억원 → (개선) 1.5억원~2억원

○ 계절근로 외국인이 노동자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 체류허가신청 확인서*로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 단축

* 출입국관서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前 임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

장단기 로드맵

과제별	'26	'27~'28	'29~30
▶ 안전의식 제고	▶ 계절근로 고용농가 안전 체 크리스트 제출 의무화 ▶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	▶ 모바일 안전진단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 ▶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계속	▶ 안전체크리스트 점검 대상 농가 확대 ▶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계속
▶ 농작업장 안전성 제고	▶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·보급 추진	▶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·보급계속	▶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·보급계속
▶ 중대재해 예방·대응	▶ 농업인 대상 중대재해 교육·홍보 추진	▶ 안전교육 이수와 정책지원과의 연계 검토	▶ 소규모사업장 정부지원 사업 참여 홍보·확대
▶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	▶ 계절근로 고용농가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	▶ 안전보험 운영(계속)	▶ 안전보험 운영(계속)

2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제도 보완

현황 및 여건

- '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, 농업 노동자 일부는 언어 및 신체폭력, 성희롱,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
 - 이 중, 내국인은 0.3%인 반면 외국인은 5.0%로,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인권보호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*
 - *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언어폭력(4.7%), 신체폭력(0.6%), 성희롱·성폭력(0.2%), 따돌림·고립함(0.2%)
- 농업 노동자 임금체불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*이나,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증가하는 추세**
 - * '24년 임금체불 비중(체불액/임금총액) : 농업 0.01%, 건설업 0.59, 제조업 0.23, 전체 산업 0.16
 - ** ('23) 내국인 5,122억원/ 외국인 1,644억원 → ('24) 4,784(△338, △6.6%)/1,958(314↑, 19.1%↑)
- 지방정부간 MOU 체결 등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여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

❖ 제3자에 의한 계절노동자 임금갈취 사례

· △△군은 필리핀 계절노동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, 서류작업 대행 수수료, 항공료·건강검진·여권발급 그 외 입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대납 등 명목으로 브로커가 계절노동자에게 임금 중 일부 지급 요구

- 인권 교육은 외국인력 고용 농가 및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 중
 - (농식품부) 농협중앙회에 농업 노동자 인권보호상담실*을 설치('24.4), 외국인 노동자 고충상담과 함께 농가 대상 인권·노무 교육 지원 중
 - * 공인노무사 및 통역인력(6개 국어) 배치, 상담 콜센터 운영(1588-2740)
 - ↳ (교육) '24: 9개 시군/615명 → '25.上: 15/1,159, (상담) '24: 1,205건 → '25.上: 1,101
 -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직원 대상 성·인권 교육을 의무화* ('24.12), 시·군, 농촌인력증개센터 대상 인권·노무 교육 실시하여 농가 지도역량 제고
 - * 인권침해 발생 농협에 대해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참여 제한 중

- (시·군)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배정 前 농가 대상 인권 교육 의무 실시, 노동자에게는 입국 직후 인권침해 신고 요령 등 교육
 - (법무부)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*을 통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교육 실시('24: 834명 → '25: 1,133)
 - * 입국 초기 외국인이 숙지해야 할 생활정보·권리와 의무 등을 교육,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187개 운영기관(대학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)에서 교육 실시
 - (노동부) 고용허가 외국인 신규 사용자에게 인권교육 의무 실시,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후 성폭력 예방·신고 요령 등 교육
- 법무부는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신매매식별지표*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3자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, 개입 확인시 비자발급 중단
- * 입국 前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시 계절노동자와 제3자간 별도계약·비용 지급 여부, 입국 後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여권압수·임금갈취·폭행 등 확인
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출국 시에도 인신매매식별지표를 작성토록 하여 농가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, 인권침해 농가에 대해서는 노동자 배정 제한
- 최근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*, 임금채불보증보험 상품 개발 등 후속조치 추진 중
- * (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)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,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, 임금채불 보증보험 도입, 귀국 前 금품관계 청산 등('26.2 시행)
 - (출입국관리법)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운영, 노동자 모집·선발에 제3자 개입 금지 등('26.1 시행)

< 現 E-9 외국인 노동자 임금채불 보호제도 >

구분	임금채권보장제도	임금채불보증보험
근거법률	임금채권보장법	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
적용범위	산재보험 적용 사업장(5인 이상, 법인)	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* 계절근로자는 적용 제외
적용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총액의 0.06%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적립 *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 ▪ 임금채불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 변제하고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주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 * 보험료: 66,300원/인(보험기간: 4년 10개월) ▪ 임금채불시 노동자가 고용청에 신고, 채불확인이 되면 노동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, 대위변제한 보험회사가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

목표 및 세부추진계획

- ◆ 고용주 대상 인권·노무 교육 강화로 농업분야 인권 감수성 제고
- ◆ 관계부처와 협업, 인권실태 점검 및 임금체불방지 조치 강화

- **(인권·노무 교육)**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·임금지급 원칙* 등을 교육,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처방법 등 교육 강화
 - * 최저임금 이상, 매월 1회이상 정기지급, 본인에게 직접지급, 연장근로시 수당지급 등
 -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**지방정부 인권센터** 등과 협업하여 '現 집합교육 방식의 인권교육 → 사례를 바탕으로 한 **참여형 교육**'* 으로 개편
 - * (예: 역할극) 사업장에서의 차별·폭력 등의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피해자·가해자 역할을 맡아본 뒤 각 입장에서 느낀 점과 개선방법을 토론
 - **모든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**(26, 법무부)
- **(인권 실태점검)** 인권 실태조사(매년) 및 관계부처(노동부·법무부)·지방정부 합동 **인권 실태점검**(年 1회 → 2회) 통해 문제 조기진단·대책 강화
 -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**별점부과 확대 등 외국인 배정 제한 강화***(법무부 협조)
 - * 계절근로의 경우, 성폭력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고용주 배정 제한, 각종 인권침해 및 산업안전 지침 위반 등에 대해 누적 별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배정 제한
 - 특히, 성폭력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당사자 분리 조치,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다른 노동자도 근무처 변경 조치 추진
 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**송출국 관계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소통 및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협력사례 발굴·확산**

❖ 송출국 관계자의 국내 지원 사례(캄보디아)

- (활동인원) 10명(캄보디아 당국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를 계약직으로 고용)
- (지원내용)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체류하는 지역*을 중심으로 지원인력이 상주하면서 지방정부·농가 등과 소통, 노동자 처우개선에 협력

* 괴산, 이천, 양평, 화천, 양구, 의성, 봉화, 인천, 대구

□ **(임금체불 방지)** 임금보호 제도 및 임금체불 방지 위한 조치 강화

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(위반시 500만원 벌금, '26) 및 귀국 前 금품관계 청산 의무화(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, '26)
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제3자가 개입, 임금 갈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MOU 체결 등을 지원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* 운영('26, 법무부)
 - * 출입국관리법 상 지원업무 : 지방정부의 MOU 체결지원, 계절근로자 선발·입국·교육·통역·체류·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모집·선발 및 채용과정에 제3자 개입시 처벌 강화*
 - * 「출입국관리법」 개정('26.1시행)으로 제3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(3년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)

□ **(인권존중 문화 조성)**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문화 조성 활동 강화, 매년 인권보호 모범 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홍보

- (언어폭력) 비격식적·하대 호칭(예: 야, 너) 대신 이름 불러주기, 욕설 없이 바른말로 작업지도 하기 등 농장내 언어 수칙 보급
- (성희롱·성폭력) 성범죄에 해당되는 언행을 알기쉽게 사례집으로 제작·배포하여 고용주 인식 제고, 노동자에게는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
- (따돌림·괴롭힘) 지방정부·농협 등 농업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교류 행사를 지원, 외국문화에 대한 포용적 태도 확산

❖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지역주민간 교류 사례(전남 곡성군)

· 곡성농협은 라오스 출신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마을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꽃밭 조성 및 지역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('25.7월)



※ 출처: 농수축산신문

장단기 로드맵

과제 별	'26	'27~'28	'29~30
▶ 인권·노무 교육	▶ 조직응답프로그램 확대 ▶ 참여교육 콘텐츠 개발	▶ 참여형 교육 시범운영	▶ 참여형 교육 확대
▶ 인권 실태점검	▶ 고용인력 인권 실태조사 ▶ 관계기관 합동점검(연회)	▶ 인권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(계속)	▶ 인권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(계속)
▶ 임금체불 방지	▶ 임금체불 보증보험 도입 ▶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	▶ 전문기관 운영(계속)	▶ 전문기관 운영(계속)
▶ 인권존중 문화 조성	▶ 농장내 언어수칙 보급	▶ 인권보호 모범농가 포상	▶ 포상(계속) 및 우수사례 홍보·확산

3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

현황 및 여건

- 고용허가는 농가의 숙소제공 의무가 없으나,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소 제공해야 함, 숙소 제공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기준* 준수 필요
 - * 1실 8명 이하, 화장실 및 세면·목욕시설, 채광·환기 및 냉·난방 설비, 화재예방 장치 등
- 외국인 노동자 숙소 유형은 일반주택(34.9%), 기숙사(11.5%), 원룸(5.4%), 기타(48.2%)* 順, 비용은 주로 농가가 부담**(24.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)
 - * 조립식 패널·컨테이너 가건물, 숙박업소(민박·모텔), 아파트 등
 - ** 고용주 전액 부담 69.0%, 고용주 일부 부담 9.2%, 노동자 전액 부담 21.8%
- 고용주의 관리상 편의, 노동자의 숙식비 절약 등의 사유로 사업장 부근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

❖ 외국인 노동자 취약 주거시설 사고 사례

- 2020년 겨울, 한파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난방공급이 끊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한 사건 발생



※ 출처: KBS 뉴스

-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숙소 건립 지원 중*, 농가에서 숙소를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 규제 완화(24.7)**
 - * '25.9월 기준, 운영 중인 기숙사 20개소(농식품부 9, 지방정부 11), 건립 중인 곳 28개소
 - ** 농업진흥구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시 농업인주택 면적상한 확대(660㎡ 이하 → 1,000㎡ 이하)

❖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사례(전북 고창군)

- (사업기간) '22~'24년
- (사업비) 2,500백만원(국비 750, 도비 225, 군비 1,525)
- (사업내용) 舊 모텔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로 개축(4층)
 - 48명 수용(2인실 24개), 다목적실, 취사실, 휴게실 등
- (사용료) 노동자가 월 20만원(보증금 30만원) 부담



※ 출처: 고창군

- 외국인력 도입 증가 속도에 비해 숙소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주거환경 개선 위해 빠르게 숙소 공급 확대 필요

목표 및 세부추진계획

◆ 공공숙소 건립을 확대하고 숙소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주거안정 지원

□ (공공숙소) 외국인 노동자 공공숙소 건립 확대

- (농식품부) 기숙사 신축 뿐만 아니라 농협 유�휴시설, 농촌체험마을 등을 개조하여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* (기존) 지방정부가 직접 기숙사를 신축·리모델링하는 경우 지원

→ (개선)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유�휴시설, 농촌체험마을 등 리모델링도 지원

- 지방정부 자체적으로도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(마을회관 등) 유힬시설 정비, 지역대학의 유힬공간(기숙사 등) 임대를 통해 숙소 공급 확대

❖ 마을시설 정비 통한 숙소제공 사례(강원 화천군)

- ▶ (사업기간) '24년
- ▶ (사업비) 400백만원(도비 200, 군비 200)
- ▶ (사업내용) 미사용 마을 공동이용시설 6개소(경로당 5, 마을회관 1)를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리모델링
- ▶ (사용료) 외국인 노동자가 월 10만원 부담



※ 출처: 화천군

❖ 지역대학 기숙사를 외국인 숙소로 활용 사례(경북 김천시)

- ▶ (임대기간) 8개월 단위 사용('23년, '24년)
- ▶ (사업내용) 경북보건대학교 기숙사 5개 동 중 1개 동을 공공형 계절근로(100명) 숙소로 확보하여 제공
- ▶ (사용료) 월 13만원(자부담 3만원, 시비 보조 10만원)



※ 출처: 김천시

- (노동부) 외국인 노동자(E-9) 고용 밀집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 및 숙소 개보수 지원('26년 신규 약 37억원)

* (공공 주거시설 건립, '25~'27) 2개소(경남 김해, 사천), 총 180억원(국비 30%, 지방비 70%) / (개보수, '26) 노후된 화장실, 냉난방 설비 개보수 비용(210개소, 개소당 최대 2천만원)

- 농촌소멸에 대응한 빈집재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리모델링 후 청년·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숙소로 제공

❖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례(충남)

- ▶ (사업기간) '25년
- ▶ (사업비) 2,100백만원(도비 30%, 시군비 70%)
- ▶ (사업내용) 빈집소유자 또는 시·군이 빈집을 리모델링 후 청년, 저소득층, 귀농·귀촌인, 외국인 노동자 등에 무상 임대(30개소)
 - 개소당 최대 7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 보조 지원
- ▶ (무상 임대기간) 1년~4년(보조금액에 따라 차등)



※ 출처: 충청남도

□ **(정보제공)**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내 펜션, 민박 등 유희시설 임대정보 제공 및 정착지원

-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'농업 노동자 숙소은행'을 개설하여 지역별 펜션·민박 등 임대정보 게시·공유(26)
- 농가·지방정부·펜션 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노동자 숙소 찾기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
- 지역주민을 외국인 노동자 멘토로 지정하여 한국생활 정착지원

❖ 다국적 농작업팀 구성·운영 통한 지원 사례(경북 봉화농협)

- ▶ (농작업팀 구성) 농작업 경험이 많은 내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로 작업팀 구성(예시: 내국인 2명+외국인 4명)
- ▶ (운영) 팀 단위로 농작업 대행
 - 내국인 노동자가 농작업 요령을 지도하면서 유대 관계가 형성, 한국생활 정보 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도 지원



※ 출처: 봉화농협

□ **(지도·점검)**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

- 법무부·노동부 및 지방정부와 숙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(반기 1회),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근로자 배정취소 등 제재 강화

장단기 로드맵

과제별	'26	'27~'28	'29~30
▶ 공공숙소 등 근로자 숙소 공급 확대	▶ 농촌 유희시설 활용 숙소 확충	▶ 농촌 유희시설 활용 숙소 확충(계속)	▶ 농촌 유희시설 활용 숙소 확충(계속)
▶ 임대숙소 정보 제공	▶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개설 및 시범운영	▶ 숙소은행 참여 시·군 확대	▶ 숙소은행 전국 운영
▶ 지도·점검	▶ 숙소 실태점검	▶ 숙소 실태점검(계속)	▶ 숙소 실태점검(계속)

현황 및 여건

- (농촌인력중개센터) 189개소(광역9, 기초 180) 운영 중, 전체 인력중개 건수는 증가하였지만*, 센터 간 운영성과 차이가 큰 상황**
 - * 전체 중개실적: ('20) 92개소/1,336천명(연인원) → ('24) 189개소/2,503(1.9배↑)
 - ** 센터별 중개실적('24) : (평균) 7.2천명(연인원), (상위 10%) 28.1, (하위 10%) 0.7
- 기 확보된 농작업자 풀 위주로 매칭하여 신규인력 유치 노력이 부족
- 센터 기능이 인력중개 중심이다 보니 현장의 인권·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력 부족, 센터 성과평가를 통한 기능개편 필요
- (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) '24년부터 농협중앙회·농정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, 기관별 장점을 살린 기능개편 필요
 - 농협중앙회 內 인권보호상담실 설치하여 노무·인권분야 상담지원, 외국인 노동자 농작업 기술·안전 교육 영상 제작·보급
 - 농정원(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)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, 도농 인력중개 플랫폼 운영 등 시·군의 인력중개 지원
 - 기관 고유기능·장점(교육·홍보·정보화 등) 살린 고용인력 지원 역할 부족
 - * 「농업·농촌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정원 설립목적: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, 농식품·농촌 정보화의 촉진,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등

목표 및 세부추진계획

- ◆ 농촌인력중개센터 유형 다양화로 인권·안전 등의 현장지원 강화
- ◆ 농협은 인권보호에 특화, 농정원은 고용인력 육성에 특화

- (농촌인력중개센터) 광역은 시·군 인력풀 통합 운영 등 집중, 기초는 지역별 농업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구분·운영
 - (시·도형) 관내 인력수급 협의체* 운영, 임금 동향 모니터링, 교육·상담·통역 등 공동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풀 구축, 일자리 홍보 강화
 - * (구성) 지방정부 인력담당부서, 농촌인력중개센터, 공공형 계절근로 농협, 출입국사무소 등 (역할) 긴급수요 발생시 시군간 유희인력 활용 지원, 외국인 노동자 인권 점검 등

- (시·군형) 인력중개 실적 등을 평가하여 중개형과 지원형으로 구분
 - (중개형) 도시인접 등 신규인력 유입여건이 양호하고 인력중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은 인력중개와 신규인력 농작업 교육에 집중
 - (지원형) 도시와 거리가 멀고 외국인력 활용이 보다 중요한 지역은 농가 대상 인권·안전 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

□ (농정원)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고용인력 육성에 특화

- 농업 노동자 숙련도 향상 위한 농작업·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, 외국인 노동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
- 안전 전문가(농업교육안전지도사, 민간자격) 양성을 통해 농가 안전교육 및 현장지도 지원, 안전문화 확산 및 농업 일자리 인식제고 위한 홍보 강화

□ (농협) 인권보호에 특화, 전화상담 중심 → 대면 현장서비스 강화

- 권역별 정기적 방문상담, 전화상담 중 확인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*에 대한 긴급 현장 상담 등 찾아가는 인권보호상담실 운영
 - * 폭행·협박, 성폭행, 임금체불, 신분증 압수 및 제3자에 의한 임금갈취 등
- 피해 신고자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*에 연결하여 구제 지원
 - * 피해유형 및 피해자 상황에 따라 검·경, 법률상담, 범죄피해자 센터 등 14개 참여기관 연계
- 지역농협 인력중개센터 담당자 등을 농업 노동자 인권지킴이로 위촉하여 농가의 인권보호 실천을 지도·홍보

장단기 로드맵

과제 별	'26	'27~'28	'29~30
▶ [지방정부] 농촌인력 중개센터 기능 차별화	▶ 성과평가 실시	▶ 운영유형 다양화	▶ 성과평가 후 제도개선 지속(계속)
▶ [농정원] 고용인력 육성에 특화	▶ 농업노동자 교육·안전 지원 및 가치홍보	▶ 농업노동자 교육·안전 지원 및 가치홍보(계속)	▶ 농업노동자 교육·안전 지원 및 가치홍보(계속)
▶ [농협] 인권보호에 특화	▶ 찾아가는 인권상담 및 인권지킴이 위촉	▶ 찾아가는 인권상담(계속)	▶ 찾아가는 인권상담(계속)

VI. 추진일정

연번	추진과제	소관부처 및 기관	일정
전략 1. 현장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인력 공급			
(1)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 40% 이상으로 확대			
①	신규인력 유입 촉진	농식품부, 농협, 노동부, 성평등가족부, 지방정부	'26~
②	시·도 단위 인력 통합 등 인력운용 효율화	농식품부, 지방정부	'26~
③	인력 중개사업과 농기계 임대사업 연계	농식품부	'26~
④	도농 지방정부간 인력이음사업 추진	지방정부	'26~
(2)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외국인력 도입 개선			
①	공공형 계절근로 등 외국인력 도입 확대	농식품부, 법무부, 복지부, 농협	'26~
②	농작업 위탁형 확대 등 숙련노동력 확보	농식품부, 노동부, 법무부	'26~
③	계절근로 신속 도입 지원	법무부	'26~
④	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	농식품부, 노동부, 법무부	'26~
(3) 고용인력 양성 체계 구축			
①	맞춤교육·이력관리를 통한 국내인력 양성	농정원, 지방정부	'26~
②	외국인력 도입 전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국인력 양성	농정원, 법무부	'26~
전략 2.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			
(1)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			
①	농가 고용주·노동자 안전의식 제고	농식품부, 농정원, 농진청	'26~
②	농작업장 안전환경 조성	농진청	'26~
③	중대재해 예방	농식품부, 농진청, 지방정부	'26~
④	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	농식품부, 법무부	'26~
(2)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제도 보완			
①	인권·노무 교육 강화	농식품부, 노동부, 법무부, 지방정부	'26~
②	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강화	농식품부, 노동부, 법무부, 지방정부	'26~
③	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	농식품부, 법무부	'26~
④	인권존중 문화 조성	농식품부, 지방정부, 농협	'26~
(3)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			
①	공공숙소 건립 확대	농식품부, 노동부	'26~
②	유휴시설 임대 정보제공 확대	농식품부, 지방정부	'26~
③	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도·점검 강화	농식품부, 노동부, 법무부, 지방정부	'26~
전략 3. 고용인력 지원기관 기능 강화			
①	[지방정부] 농촌인력중개센터 유형 다양화	농식품부, 지방정부	'26~
②	[농정원] 고용인력 육성에 특화	농정원	'26~
③	[농협] 인권보호 기능에 특화	농협	'26~